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21년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관(회계·세무) 한길 회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감면제도 개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사회적으로는 청년실업과 여성의 경력단절, 노인빈곤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실업과 여성 경력단절, 노인빈곤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제도로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1) 최승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V),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09.

2021.8. 월간 안내사항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관(회계세무)

2. 감면요건

1) 감면대상 취업자

구분	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2012년 1월 1일(법 시행)부터 2021년 12월 31일(일몰예정)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 차감	5년	90%	과세기간 별 150 만원
고령자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일몰예정)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등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일몰예정)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여성	2017년 1월 1일(법 시행)부터 2021년 12월 31일(일몰예정)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제외 근로자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2021.8. 월간 안내사항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관(회계세무)

2) 감면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구 분	업종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감면세액 계산²⁾

1) 감면대상 소득과 감면대상 아닌 소득이 혼재한 경우

(예시) 2021년도 8월에 취업(전근무지 감면 제외 대상)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한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 ① 2021년 총급여 50,000,000원(종전근무지 급여 포함)
- ② 현 근무지 총급여 20,000,000원(감면 신청)
- ③ 종전 근무지 총급여 30,000,000원(감면 제외 대상)
- ④ 산출세액 3,802,500원
- ⑤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감면 미적용 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1,368,900원

$$3,802,500 \times \frac{20,000,000}{50,000,000} \times 90\% = 1,368,900$$

$$\times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text{감면율}$$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422,400원

$$660,000 \times \left(1 - \frac{1,368,900}{3,802,500}\right) = 422,400 \quad \times \quad \frac{\text{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text{산출세액}} \times \left(1 - \frac{\text{감면액}}{\text{산출세액}}\right)$$

2) 감면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예시) 중소기업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자의 2020년 감면세액과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 공제액은?

- ① 2021년 총급여 50,000,000원
- ② 산출세액 3,802,500원
- ③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감면 미적용 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1,500,000원

$$3,802,500 \times \frac{50,000,000}{50,000,000} \times 90\% = 3,422,250 \text{이나, 한도액 } 1,500,000 \text{원 적용}$$

$$\times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text{감면율}$$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399,644원

$$660,000 \times \left(1 - \frac{1,500,000}{3,802,500}\right) = 399,644 \quad \times \quad \frac{\text{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text{산출세액}} \times \left(1 - \frac{\text{감면액}}{\text{산출세액}}\right)$$

2)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2021.04.

4. 신청방법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신청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서(붙임서식)와 근로자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퇴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청

① 홈택스(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③ 제출방식 선택 → 직접작성 제출방식 선택 → 사업장 기본정보 입력

→ 감면적용 대상자(근로자) 정보 입력 → 제출하기

신청/제출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홈택스 서비스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전용카드, 근로장려금, 연말정산소득공제자료의 신청 또는 제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 신청 업무는 승인, 허가, 신고 등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이용, 첨부서류가 있는 민원의 경우 pdf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후 나의 민원신청내역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제출 이용시간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연중무휴 06:00 ~ 24:00
- 휴·폐업 및 재개업신고 연중무휴 06:00 ~ 24:00
- 소비세세 및 거주자 증명, 국제세원, 일반세무서류 업무 24시간

신청/제출 이용절차

- 01 홈택스 로그인
- 02 신청/제출 대상선택 신청/제출 진행
- 03 신청/제출 결과확인

과세자료제출

- 복지이금
- 인건비 간편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장제출자 등의 과세자료
- 세금계산서합계표
- 계산서합계표
- 과세자료 삭제요청
- 신종금융상품 중 조세특례적용
- 연금수령개시및해지명세서
- 출자자분등·경통지서 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 파생상품거래내역서
- 보험금 자료제출
- 예탁증권 관련 예탁자별 이자, 배당소득 지급 실적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소비세세 신청/제출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 가능하나, 경정청구 진행시 세무서에서 처리하는데 여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미 신청했는데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여부는 “감면신청 확인하기”(클릭)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후에라도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A.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취업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3. 1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취업자 유형 [] 청년(15세~34세) [] 60세 이상 사람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2. 취업 시 연령	
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년 월 일 (취업일: , 생년월일:)
⑥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년 월 일 (입대일·소집일: , 전역일·소집해제일:)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⑤ - ⑥)	년 월 일
* ⑥ 및 ⑦은 '청년' 만 작성합니다.	

3. 감면기간	
⑧ 시작일*: 년 월 일 * 2012. 1. 1.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⑨ 종료일*: 년 월 일 * 시작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동일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첨부서류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3.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 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용합니다.
8. 경력단절여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주업종코드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취업일	취업자 유형	중소기업 취업 시 연령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감면기간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취업자 유형"은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병역근무기간"과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취업자 유형이 '청년'인 경우 적습니다.
- "감면기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⑧·⑨란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 "주업종코드" 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